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3선거구 문병훈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

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에게 참석 기회를 제공해달라는

구청장협의회의 건의안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.

○ 현재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요청 시,

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

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조례안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.

○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명문화함으로써

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

시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